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지적기준점 관리업무 위탁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내 용

울산광역시, 5개 구·군청¹⁾(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²⁾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105조 및 시행령 제104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측량기준점 중 지적기준점의 관리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적기준점 관리 위탁대상, 위·수탁자의 역할 등을 담은 지적기준점 위탁관리 방안³⁾을 마련하여 2016. 3. 9.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시·도에 통보한 바 있으며,

위 위탁관리 방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매년 현황조사 수량,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위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와 위탁계약 체결하고, 공사

1)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2)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으로 국가기준점, 지적기준점, 공공기준점이 있음

3)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안)을 마련한 문서(공간정보제도과-903호 2016. 3. 9.)

는 위탁업무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지적기준점표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및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관리업무 위탁 법률이 시행된 2015. 6. 4. 부터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관리업무를 공사에 위탁하여 일관성 있는 지적기준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울산광역시 및 지적소관청에서 지적기준점 관리업무를 공사에 위탁한 실적은 [표]와 같이 2016년은 없고, 2017년은 ○○군만 1,950점을 위탁⁴⁾하였으며, 2018년은 ○○군이 2,425점을 위탁⁵⁾할 예정이고 그 외 울산광역시 및 중·남·동·북구는 위탁계획이 없다.

[표] 지적기준점 관리업무 위탁 현황

<단위 : 점, 개소>

2016년 위탁실적			2017년 위탁실적			2018년 위탁실적		
지적기준점 (a)	위탁 지적기준점 (b)	위탁비율 (b/a)	지적기준점 (a)	위탁 지적기준점 (b)	위탁비율 (b/a)	지적기준점 (a)	위탁 지적기준점 (b)	위탁비율 (b/a)
8,608	-	-	8,722	1,950	22%	8,927	2,425	27%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지적기준점 중 ○○군 소관 지적기준점만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등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지적기준점 통합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⁶⁾

4) ○○군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위탁(2017.3.20.~11.10), 위탁수수료 21,450,000원

5) ○○군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위탁예정(협의중), 위탁수수료 34,650,000원

6) 이에 대해 울산시 및 4개 구청은 예산부족으로 위탁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및 2019년 당초 예산 편성 등의 조치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적기준점 관리업무를 공사에 위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계획 제출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북구청장은

[통보] 소관 지적기준점의 관리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위탁하여 관련업
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